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	1915
--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년 6월 20일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태수 의원이 2016년 11월 30일에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김태수 의원이 2017년 3월 23일에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2017년 6월 20일 제274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후 심사한 결과 각각 이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제안·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2건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입법의 명확성 차원에서 청년상인의 정의를 시행령 제6조의2를 참고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‘청년상인의 육성사업’과 ‘청년상인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
(안 제2조).
- 나.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서울
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함(안 제3조제3항).
- 다.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에 청년상인의
육성사업을 추가함(제4조)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와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6. “청년상인의 육성사업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7. “청년상인”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·상점가 또는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제4호를 제4조제5호로 하고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청년상인의 육성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대안)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~5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~5(현행과 같음)</p> <p>6. “청년상인의 육성사업”이란 <u>법제1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</u></p> <p>7. “청년상인”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·상점가 또는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<u>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①~②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4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4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청년상인의 육성사업</u></p> <p>5.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